

아산시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

[시행 2026.01.01]
(일부개정) 2025.12.15 조례 제2683호

관리책임부서명 : 사회복지과
관리책임전화번호 : 041-540-2320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 및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5.12.15.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보훈명예수당(이하 "수당"이라 한다)"이란 전몰군경·순직군경의 유족, 전상군경·공상군경·무공수훈자·보국수훈자·순직공무원·특수임무유공자·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아산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매월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18.08.16., 2024.11.5.>
2. "전몰군경·전상군경·순직군경·공상군경·무공수훈자·보국수훈자·순직공무원"이란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제3호에서 제8호 및 제14호에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·가족을 말한다. <개정 2018.08.16., 2024.11.5., 2025.12.15.>
3. "특수임무유공자"란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. (신설 2018.08.16.)<개정 2025.12.15.>
4. "고엽제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"란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정한 사람을 말한다.<신설 2024.11.5.>

제3조(대상 및 지급액) 시장은 신청일 기준으로 제2조제2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은 받은 우선순위 유족으로서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 원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. 다만「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」에 따라 참전유공자 수당 또는 복직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.<개정 2018.08.16., 2019.11.5., 2021.4.26., 2024.11.5., 2025.12.15.>

제4조(지급방법 등)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·면·동에 신청하여야 하며, 이를 접수한 읍·면·동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 신청한 사항 중 수당 지급 계좌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<개정 2024.11.5.>

② 시장은 매월 20일(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을 말한다)에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(이하 "수급권자"라 한다)이 지정하는 예금계좌(「은행법」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의 계좌를 말한다)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<종전에 제3항에서 이동 2024.11.5.>

③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.<신설 2024.11.5.>

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입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한다.<2024.11.5.>

제5조(수급권자의 결정) 시장은 제4조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수급권자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이유를 붙여 알려야 한다. <개정 2025.12.15.>

제6조(신상변동의 신고) 제5조에 따라 수급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자신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. <개정 2025.12.15.>

1. 사망한 때
2. 다른 시·군·구로 주소지를 옮긴 때
3. 그 밖에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때

제7조(지급 중지 및 환수)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수당지급을 중지해야 한다. 이 경우 지급중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.

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.

③ 삭제(2015.10.26)

④ 삭제(2015.10.26)

제8조(수급권자의 관리) ① 시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하여 사망·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수시로 파악하여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관할 보건지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. (개정 2018.08.16.)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(조례 제1225호)

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조례 제140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조례 제1764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조례 제192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조례 제2091호)

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조례 제2533호)

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조례 제2683호)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